

「2차 One-Stop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화성시와 함께 화성지역 소공인의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제품개발·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One-Stop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화성상공회의소

1 사업개요

- 사업명 : 2차 One-Stop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7월 ~ 2024년 11월
- 지원규모 : 7개사
- 지원내용 : 소공인 시제품 개발 제작을 위한 재료비 및 외주비 등 지원

※본 사업은 화성시로부터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임

지원 항목	주요 내용
디자인 및 설계비용	시제품 개발 시 외주 업체에 디자인 및 설계비용 등
원자재 구입비용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자재 구입비용 등
위탁 외주 가공비용	시제품 개발 시 일부 부품을 외주 업체에 위탁 수행하는 실제 경비 등
금형 제작비용	시제품 개발 시 설계를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목업, 금형제작) 등
시험·분석 장비임대비용	시제품 개발 시 시험분석 지원 및 장비 임대비용 등
기타 비용	위의 열거되지 않은 항목 중 복합지원센터에 사전 승인을 득한 비용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1,000만원(부가세 별도)
※ 부가세 및 지원금 초과액은 신청업체 부담임.
- 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 10인 미만 제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2, C24~C31』 9개 업종 소공인 업체

2 지원절차

단계	주요 내용	준비사항 및 관련서류																														
① 신청 접수 (소공인 → 센터)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시 제출서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제출서류</th> <th>부수</th> </tr> </thead> <tbody> <tr><td>1</td><td>사업신청서</td><td>1부</td></tr> <tr><td>2</td><td>개인정보동의서</td><td>1부</td></tr> <tr><td>3</td><td>성실이행서약서</td><td>1부</td></tr> <tr><td>4</td><td>사업자등록증 사본</td><td>1부</td></tr> <tr><td>5</td><td>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td><td>1부</td></tr> <tr><td>6</td><td>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td><td>각1부</td></tr> <tr><td>7</td><td>One-Stop 개발 계획서</td><td>1부</td></tr> <tr><td>8</td><td>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td><td>1부</td></tr> <tr><td>9</td><td>시제품 개발 비용 견적서(비교견적서)</td><td>각1부</td></tr> </tbody> </table> 	제출서류		부수	1	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성실이행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7	One-Stop 개발 계획서	1부	8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9	시제품 개발 비용 견적서(비교견적서)	각1부
제출서류		부수																														
1	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성실이행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7	One-Stop 개발 계획서	1부																														
8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9	시제품 개발 비용 견적서(비교견적서)	각1부																														
② 선정평가 (소공인 →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업체당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선정평가표 기준 평가 ■ 서류평가 - 시제품 개발 계획서등 신청내용 평가 ■ 발표평가 - 업체당 15분 PT발표(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③ 협약 (센터 ↔ 소공인)	협약 진행 및 공급업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업체는 협약서(센터양식)를 작성하여 센터와 협약 체결 진행 ■ 공급업체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붙임7)를 받아 센터에 제출 																														
④ 중간점검 (센터 → 소공인)	사업 추진현황 중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시점까지의 시제품 제작 과정 점검 및 사진등 서류 제출 요청 																														
⑤ 제품개발 완료 (소공인)	시제품 결과물 도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에 제시한 사업기간 이내 시제품 개발 완료하여 결과물 제작 완료 																														
⑥ 지원금 신청서 제출 (소공인 → 센터)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제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제출서류</th> <th>부수</th> </tr> </thead> <tbody> <tr><td>1</td><td>지원금 신청서</td><td>1부</td></tr> <tr><td>2</td><td>완료보고서</td><td>1부</td></tr> <tr><td>3</td><td>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td><td>1부</td></tr> <tr><td>4</td><td>사업비 항목별 추진 견적서(비교견적서)</td><td>각 1부</td></tr> <tr><td>5</td><td>전자세금계산서</td><td>1부</td></tr> <tr><td>6</td><td>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td><td>각1부</td></tr> <tr><td>7</td><td>공급업체 통장사본</td><td>각1부</td></tr> <tr><td>8</td><td>지부담액(부가세 + 지원금초과금액) 입금 확인증</td><td>1부</td></tr> </tbody> </table> 	제출서류		부수	1	지원금 신청서	1부	2	완료보고서	1부	3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1부	4	사업비 항목별 추진 견적서(비교견적서)	각 1부	5	전자세금계산서	1부	6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각1부	7	공급업체 통장사본	각1부	8	지부담액(부가세 + 지원금초과금액) 입금 확인증	1부			
제출서류		부수																														
1	지원금 신청서	1부																														
2	완료보고서	1부																														
3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1부																														
4	사업비 항목별 추진 견적서(비교견적서)	각 1부																														
5	전자세금계산서	1부																														
6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각1부																														
7	공급업체 통장사본	각1부																														
8	지부담액(부가세 + 지원금초과금액) 입금 확인증	1부																														
⑦ 지원금 정산 (센터 → 공급업체)	공급업체에 지원금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공급업체로 지원금 입금 																														

※ 세부추진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3

모집안내

- 공고기간 : 24. 7. 8(월) ~ 7. 22(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방문접수
 - * 이메일 주소 : hssmcenter@gmail.com
 - * 팩스 : 031-296-7909

4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선정방법 :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표 기준 평가
 - (서류평가) One-Stop 개발의 사업계획, 기술 역량 등
 - (발표평가) 개발업체 현황, 추진과제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업체당 15분 발표
- 선정기준 :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함
 - 1순위 : 추진과제의 타당성 고득점 업체,
복합지원센터 장비활용 계획이 있는 업체
 - 2순위 : 기대효과의 고득점 업체
- 결과통보 : 선정업체 개별통보

5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선정통보일 이전에 과제 수행을 진행하여 시공(제작)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외주 업체 및 과제 주요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지정 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과제를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휴업, 사업장 양도, 지방세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관련법을 위반, 과제 부실 등 화성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신청내용 변경 및 포기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 내용 변경, 외주 업체 변경 발생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전 센터와 협의 없이 지원 포기의 경우 이후 2년간 센터 지원사업에 제약이 따름

공급업체(제작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공급업체는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 중에서 복수 견적을 받아 가격이 낮은 업체를 소공인이 직접 선정
- 신청서 견적품목과 관련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함
- 공급업체는 2개사 이내로 한함.
- 신청업체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조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공급업체 선정 불가
- 납품관련 이견 사항은 소공인과 공급업체간 해결해야 함
- 공급업체에 지원금 입금 시점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 시켜야 함

견적서(비교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견적서(비교견적서) 제출시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구분	필수항목	필수기재사항
1	견적일	사업 모집 기간 내
2	공급 받는자	사업 신청 업체명
3	공급업체	도장날인,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4	견적 내용	품목, 규격 및 사양,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 원 견적서와 비교 견적서에 동일한 품목, 규격 및 사양을 기입하여 상호 가격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제출

6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완료보고

지원금 신청 제출 기한 : 2024. 11. 1.(금) 17:00까지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 제출 서류

구분	제출자료 목록	비고
필수	1. 지원금 지급신청서	(붙임8 서식)
	2. 완료 보고서(제작 과정 사진 첨부)	(붙임9 서식)
	3.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1부	(붙임10 서식)
	4. 제작견적서(비교 견적서 포함) 각 1부	
	5.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	
	6.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7. 공급업체 통장 사본 각 1부	
	8. 자부담 입금 확인증 각 1부	(부가세 + 지원금초과금액)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시제품 제작 완료된 업체는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 등이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제작 과정 사진 미첨부시 지급 불가함으로 반드시 제작 과정 사진 확도에 유의
- (지출증빙) 전자세금계산서만 가능

□ 제작비용 자부담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부가세 및 지원금초과액은 신청업체 부담
- 자부담 입금시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상대 업체 대표자(또는 법인) 계좌이체만 인정
- (자부담 입금 증빙) 송금 확인증 등으로 입금받는자(공급업체)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센터는 필요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의 방식
 - 센터에서 공급업체에 지급(사전에 지원금 지급기한에 대해 반드시 협의 되어야 함)

7 제재 조치 등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화성상공회의소의 [기업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2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공급업체 대납,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통지일 이전 과제 시행,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

8 문의처

□ 담당자 : 유가영 매니저 031-296-7900, 070-4488-1503